



Web Contents



2024년 05월 03일 17시 32분

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안내

2023.06.02 조회수 142 등록자 김단비

코로나19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한 「전화상담 또는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」(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-177호, '20.3.2.) 및 「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」(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-889호, '20.12.16.)은 '23.6.1.부터 감염병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.

이에, 의료법 개정 전까지 「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」등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시행함을 알려드리니, 의료기관 등 관련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첨부파일

[전체\(Zip\)다운로드](#)

1.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(최종).hwp	(135 hit/ 40.6 KB)	↓
미리보기		
2.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대국민 안내자료.hwp	(105 hit/ 200.2 KB)	↓
미리보기		
3.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의료기관용 지침.hwp	(102 hit/ 453.7 KB)	↓
미리보기		
4.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약국용 지침.hwp	(90 hit/ 434.6 KB)	↓
미리보기		
5.비대면진료_시범사업_중개_플랫폼_가이드라인.hwp	(101 hit/ 70.2 KB)	↓
미리보기		

목록

이전글

제4회 국민 암예방수칙 포스터 공모전 기간 연장...

다음글

자가격리자 시험목적의 외출허용

MokPo - Si
Web Contents

